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354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354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00513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 종결 2018. 11. 9

판결선 고 2018. 12. 7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005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18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3) 피고는 C에게 물품대금과 별도로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였고, ” (3) 피고는 C에게 물품대금과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였고, ”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16행 '취소되어야 한다. ”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전부 취소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6,000,000원이고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2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1,000,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면 13~16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피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1억 원 정도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 500만 원(선글라스 5,000개를 기준으로 1개당 1,000원씩 판매시에 지급) 합계 2,500만 원에 합당한 3,600만 원으로 정한 점, ” -> ” 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약 5,000,000원(선글라스 5,000개를 기준으로 판매

시 1개당 1,000원씩 지급) 및 B의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0,000,000원을모두 감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정한 점(C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한정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C이 경영하는 B에 대하여 약 1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대여금 채무로 한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면 18~19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피고 또는 E이 C의 재산 또는

채무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敬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가47,827,820원 상당인 화성시 K 대 93㎡ 및 L 대 208㎡ 중 각

2/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이 부동산 지분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점,◎ 피고와 B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를 감안할 때, B을경영하는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 20일이 지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 피고가 B과 장기간 물품거래를하였고,B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10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B을경영하는 C 개인의 재산 또는

채무상태까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판사 손철우판사 이재신

별지